

제38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20. 11. 26.(목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####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정상교 의원

##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: 2020년 11월 17일

O 회부일자: 2020년 11월 19일

#### 3. 제안이유

-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지속적으로 심화·확대하며, 법적체계를 갖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,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교육적 대처의 필요성이 절실함.
- O 이에 충청북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해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려는 것임.

### 4. 주요내용

- O 목적(안 제1조)
- O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O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독도교육 강화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O 추진 사업(안 제5조)
- 독도교육주간 지정·운영(안 제6조)
- O 지속 가능한 독도관련 홍보 체계화(안 제7조)
- O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위해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O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, 적용범위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독도 홍보체계 구축과 홍보 콘텐츠 개발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O 일본의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역사 및 영토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.